
입 법 정 보

2017-1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5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5
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
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6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육부)	7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육부)	8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육부)	8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9
1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9
1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
1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
15.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
1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3
1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3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4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4
20.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15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15
2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6
2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16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7
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7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17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	18
2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8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9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9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보건복지부)	20
3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20
3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0
35.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1
3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38.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2
3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22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3
4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4
4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5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25
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26
4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26
4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27
4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28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9
4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0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0
51.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31
5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32
5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2
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33
55.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4
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4
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5
5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6

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6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36
6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8
6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38
6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38
6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6. 12. • 마감일자 : 2017. 7. 25.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마련과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 중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유통 등 수집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 1) 어업경영체의 연간 어업 및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추가
 - 2)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 추가
 -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추가
- 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및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 다. 정정 또는 말소된 어업경영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6 신설 및 안 별지 제6호의8호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6. 12. • 마감일자 : 2017. 7. 25.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마련과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 중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유통 등 수집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 1) 어업경영체의 연간 어업 및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추가

2)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 추가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추가

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및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다. 정정 또는 말소된 어업경영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6 신설 및 안 별지 제6호의8호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6. 12.

• 마감일자 : 2017. 7. 24.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로 확대함(안 제8조의2제1항 개정)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2항 개정)

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6. 12.

• 마감일자 : 2017. 7. 3.

○ 대한상사중재원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16. 6. 15.)되고,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17. 6. 28.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함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6. 12

• 마감일자 : 2017. 7. 24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규정인 초 중등교육법 제57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 다양한 학습과정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단위로 특정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운영하고 있는 학습과정 전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소멸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여 벌점 부과 이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한 기관에 대한 구제책 마련하고자 함.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강의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학점은행제가 속성 학위취득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학점인정 상한기준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정을 시험합격을 통해 이수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자 함.(이상 시행령)

-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명확화(안 제3조 제1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초 중등교육법 제57조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로 개정

- 나.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0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을 포함

- 다. 벌점 적용사항 및 소멸기간 명확화(안 별표1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위반 등 벌점 적용사항을 세분화 명확화하여 교육훈련기관의 혼란 방지, 벌점의 소멸기간(4년) 명시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 제고

- 라.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에 강의 평가 결과 추가(안 별표2 개정)

- 마.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합격자에게 기간별

학점인정 상한 기준 미적용(안 별표3 개정)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6. 12. • 마감일자 : 2017. 7. 24.
- 주민등록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으로 갈음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학위보유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타 전공 학위를 수여받기 위한 기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학위남발을 방지하고자 학위취득 시 학습자로 하여금 학점인정법 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제에 따른 18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6. 12. • 마감일자 : 2017. 7. 24.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국방 등의 사유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가 어려운 정보를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기간을 조문에 명시하여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함(이상 법률).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6. 13. • 마감일자 : 2017. 7. 24.
-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통지·유해성심사 등에서

발생한 제도 이행·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관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수거·회수 등의 방법·절차도 개선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신속한 회수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6. 13. • 마감일자 : 2017. 7. 24.
- 원활한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등록면제 대상, 제출자료 생략, 개별 제출 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별도의 위해성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아도 국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제출한 정보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협회의 위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6. 13. • 마감일자 : 2017. 7. 24.
- 전통주의 법적 정의와 국민의 인식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육성 정책의 대상범위 확대하고, 제주도 지역특산주의 국산 원료조달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전통주 과세 정보 요청 요건 제정으로 전통주 산업 진흥 정책의 원활하게 수행하고 함

1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6. 14. • 마감일자 : 2017. 7. 24.
-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전 등록 신

- 청시 등록증 재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부동산등기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4조·13조·53조)
-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
 - 2)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추가하고, 제3자의 직권 말소 요청을 위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인 편의 도모

1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6. 14. • 마감일자 : 2017. 7. 24.
-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관련디자인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당사자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신청 제출서류를 구체화하며, 출원중에 지분을 정한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 약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22조 제1항·제7항)
- 1) 등록신청의 당사자인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원인서류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신청의 종류 및 대상자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
- 나.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생략(안 제26조)
- 출원중 지분을 설정하여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

- 약정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 부동산등기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6조·16조·19조·47조)
-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 삭제
 - 2)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디자인권 등이 있는 등록 신청(제16조)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제3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등 법령을 정비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14. • 마감일자 : 2017. 6. 26.
-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 1)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 2)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1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6. 14. • 마감일자 : 2017. 7. 24.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일부개정(’17.3.21.)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조문을 정비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 가.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

차를 법에 규정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나. 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가 설치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의 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다. 법 제11조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안 제10조)

15.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6. 15. • 마감일자 : 2017. 7. 25.

○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중 현행 시험방법에 맞지 않고, 정수기의 성능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양도인의 행정처분 확인 절차 신설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 가.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중 검사장비 구비대상 현실화(안 별표3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구비대상 검사장비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실화 함

2) 진탕수욕조는 교반기와 수욕조의 기능 일부 중복, 먹는물검사기관이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체 실험시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구비대상에서 제외함

3) 최근 실험시 1회용 피펫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피펫세척기는 1회용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하므로 1회용 피펫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펫세척기를 구비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수욕조는 항온수욕조로 함

나. 정수기 성능검사 개정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조항 조정(안 별표9 일부개정)

1)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시 정수기 성능검사 방법 및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조항에 관련명칭을 변경함

2) 행정처분 기준조항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비고란 관련 항목은 변경되지 않아 기준조항에 맞게 관련항목을 조정함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안 별지 제 9호 서식 일부개정)

- 1) 영업자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효과 등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에게 경제적 손실 발생 등 양수인 권리보호를 위한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관련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서식을 추가함

라. 정수기 성능검사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안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 10호의2 서식, 별지 제10호의3 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일부개정)

- 1)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시 정수기 성능검사명칭 변경사항을 서식에 반영함

1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6. 15. • 마감일자 : 2017. 7. 25.
- 품질관리인 갖추어야 할 기준중 기사자격 기준을 산업기사로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 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2조 및 제6조 일부개정)
 - 1) 위생시험사 면허제도의 폐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2조의 먹는물수질 감시원 자격 기준중 ‘위생시험사’ 자격요건을 삭제함
 -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을 수질감시원 자격요건으로 준용하던 사항을 제6조 제1호에 별도 규정
 - 3)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의 자격요건중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용어를 ‘품질경영’으로 변경하고, 자격증 소지기준 중 ‘기사’에서 ‘산업기사’를 포함함

1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6. 15. • 마감일자 : 2017. 7. 25.

- 먹는물 수질기준의 미규제 유해물질이 우려수준으로 검출되더라도 법적관리수단이 없었던 먹는샘물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15. • 마감일자 : 2017. 7. 25.
- 목재제품 품질인증 폐지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의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기준의 폐지, 목재생산업 등록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5조)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해당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함
- 나.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기준 등 삭제(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법정부 인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 다. 목재생산업 등록보고 단순화(안 제30조)
목재생산업 등록한 자는 지자체 및 산림청에 매년 제출하는 사항을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단순화 함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15. • 마감일자 : 2017. 7. 10.

-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국회 및 농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나. 우선지급금 정산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20.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인)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6. 15. • 마감일자 : 2017. 7. 25.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82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6. 15. • 마감일자 : 2017. 7. 25.
- 현행 법령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가. 각종 신고제도의 합리화(안 제21조제3항, 안 제29조제5항, 안 제30조제3항)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감정평가법인 설립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및 감정평가법인 해산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기관에 신고서 도달 시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

2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6. 15. • 마감일자 : 2017. 7. 25.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2 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폐지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해당내용을 인용하고자 함.

2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6. 26.

-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증가 등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종을 유해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14739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을 위탁시행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과 상위법령 간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31.
-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등과 관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17.3)되어,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속한 연장 승인이 어려운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긴급전화센터의 장’과 같이 다양한 자격과 경력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시설의 장이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속한 연장 승인이 어려운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승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8인 이상 거주 가능한 자립지원공동생활 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에 대

해서는 연면적기준 및 종사자 수 기준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여야 하고 검사관은 도축 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경우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원유에 대한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식육가공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안 7조, 별표 2의2)

식육가공업의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도록 함

나. 체표면 오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안 별표 3)

검사관은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되어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오염원에 대해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다.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관리체계(NRP) 구축(안 별표 4)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잔류물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가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2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제품안전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범위와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비용지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도입,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 명확화 등 「임업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 14659호, 2017.3.21.공포, 2017.9.2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임업진흥법」 개정으로 임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 및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등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임업분야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갖추어야할 요건과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 나. 생산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품질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생산과정의 확인기간 연장 및 품질검사 처리 연장기간을 단축(안 제17조의4~제17조의5)
- 다.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대상, 품질인증의 기준·방법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9~제17조의13)
- 라.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업분야 교육지원, 임업기계장비의 표준작

업시간 조사 및 산촌지원 사업 추가(안 제25조의3)

마.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업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기관에, 임업분야의 교육지원과 고용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원에 각각 위탁(안 제26조)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민간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설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고하고,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제재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및 근거법령, 행정처분을 신설하려는 것임

3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17.

- 사회복지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및 기간은 법률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555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범위와 절차를 병무청장이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55조의3)

3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6. 16. • 마감일자 : 2017. 7. 26.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원격교육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변경(안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3)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함.

35.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6. 19. • 마감일자 : 2017. 7. 31.

○ 「농약관리법」 개정(법률 제14480호, ‘17. 3. 21. 공포, ’ 17. 9. 22. 시행)으로 등록취소된 농약의 회수·폐기 규정이 강화됨에 등록취소 농약 등의 회수 및 폐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6. 19. • 마감일자 : 2017. 6. 22.

○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 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전 지역 및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조정함.

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6. 19. • 마감일자 : 2017. 6. 22.
-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운영(안 제19조제3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의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 나.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안 별표 3)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각각 규정함.

38. 방산원기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6. 19. • 마감일자 : 2017. 7. 10.
-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산 관련 중요 정보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산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의 원가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3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6. 19. • 마감일자 : 2017. 7. 31.
- 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법·부당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

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학교법인 등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제회의 교육복지기관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라. 국립학교법인, 학교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7조의2)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대상인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해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90호, 2017. 6.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교육에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범위 명확화(안제9조의2제1항제1호)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해당 용기등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면제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함.

나.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합리화(안 별표 4 제3호)

공기를 압축하여 고압가스로 제조·충전하는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함.

다.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특별교육과정을 추가(안 별표 31 제4호)

시간당 처리능력 6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추가함

41. 소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및 조직 개편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방협회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에 따른 사방협회의 위탁사업 관련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 법 개정으로 사방협회의 위탁업무가 제외됨에 따른 시행규칙에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나. 사방협회의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6조제1항)

- 사방협회의 사방기술 연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연구조사처”로 개편·정비

다.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안 제17조제1항)

- 사방협회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

라.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계획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 정비(별지5호 서식)

- 일본식 표현인 “가도”를 우리말인 “임시도로”로 개정

42. 사망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사망사업법 개정(' 16.12.27.)으로 사망협회가 사망사업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른 타당성평가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망사업법에서 사망협회의 사망시설 점검 위탁업무 삭제 등 일부 조항 개정(규제개선, ' 16.12.27.)에 따른 별표 2 사망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망협회의 위탁업무 내용·절차 등 명시(안 제22조의1)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사망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 나. 사망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 정비·보완(별표2)
 - 사망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사망사업법의 위탁업무 조항 개정에 따른 사망시설의 점검 종류를 외관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하는 등 사망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및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기관 확대 등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별표 1의2)
 -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함
- 나.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안 제30조)

1)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에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감시」를 추가함

다. 검역시행장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의4, 별표 14의6)

1) 검역시행장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처분기준을 마련함

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해외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4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649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지원 전문기관 위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4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농업인 등이 농업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규제 등으로 6차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마련 및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9호, '17.3.2)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4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나, 세부 범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안 제8조의3 신설)

1) (주요내용) 사업자가 사장·군수에게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2제2항 신설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및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규모(안 제8조의4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기준면적을 500㎡이하로 하고, 설치기준을 개별법에 따르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는 농촌융복합시

설 규모를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 업무 위임·위탁(안 제25조)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사업자의 인증 및 갱신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4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경매사 제도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위반에 대한 출하제한 규정 및 공판장 개설승인 규정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함. 또한,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추진

○ 가. 수입이익금 환급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단서)

농산물 수입하는 자가 수입추천서 반납, 과오납 등 수입이익금 환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급 규정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나. 경매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 규정 마련(안 제28조제1항)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등으로 인해 경매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경매사의 업무범위를 경매부터 정가·수의 매매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다.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위반에 따른 출하제한 규정 완화(안 제38조의2제2항)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 미달 출하자의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반입이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위반 농수산물과 같은 종류의 농수산물만 반입을 금지하도록 규제 완화

라. 공판장 개설승인절차의 상향 입법 및 규제완화(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공판장 개설승인절차는 공영·민영도매시장과 달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상향입법을 추진하고,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완화 추진

마.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임명된 경매사 교육훈련(안 제75조제1항, 안 제90조제3항)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경매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 마련

바.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 82조제2항 및 제5항)

농수산물의 안전성 및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사.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관리·감독 명확화(안 제77조제3항, 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81조제2항)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은 도매시장 내 주요 유통주체이지만, 평가·보고·명령 등 관리·감독 규정에 누락된 규정이 있어 개설자의 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방지

아. 농안법 운용상 미비점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안 제41조제2항, 안 제57조제2항, 안 제66조제1항, 안 제74조제1항, 안 제78조의2제1항)

조문순서, 단어 등 농안법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6. 20. • 마감일자 : 2017. 6. 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2017. 6. 28. 시행)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일부 사업(건설업·별목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

4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6. 21. • 마감일자 : 2017. 7. 31.
- 식품운반업의 정의와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식품운반업 영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식품운반업의 정의를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 패류 및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살아있는 어류 패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 나.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규정 명확화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함. 다만, 복어독이 제거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등 공정한 조사·심의가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 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함.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6. 21. • 마감일자 : 2017. 7. 31.
-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51.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6. 21.
- 마감일자 : 2017. 7. 31.

○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신고제에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신고제 합리화를 도입하고,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며, 소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계기준을 법제화 하도록하고, 소하천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신고제 합리화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8항 및 제9항)

공무원의 소극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지않는 신고수리 사항에 대해 처리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나. 소하천 설계기준 법제화(안 제4조의4)

소하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간주제 도입(안 제10조의2)

소하천 관련 인·허가 처리지연 방지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일정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라.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직권면제 사유 구체화(안 제16조)

관리청의 재량권 남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를 직권면제 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

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안 제 17조)

소하천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함

바. 피허가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 회복 제외(안 제20조)

소하천 정비 허가 취소 관련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취소 사

유가 피허가권자에게 있는 경우 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사. 소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 명시(안 제22조)

관리청별로 다른 점용료 감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타인 토지 출입 규정 마련(안 제 26조의5, 안 제29조)

1) 소하천등 정비를 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

2) 타인 토지 출입 규정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하천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5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6. 21. • 마감일자 : 2017. 7. 31.

○ 가. 타법 개정에 의한 시행규칙 개정(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개정

나. 모성보호급여 신청 절차상 근로자 보호 강화(규칙 제118조, 제123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해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6. 21. • 마감일자 : 2017. 7. 31.

○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재지정(안 제12조제4항)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 설정(안 제42조제6항)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 대비 과다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다.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기준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채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입금액 기준인지 잔액 기준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입금액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상향(안 제95조)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각각 12개월씩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 선진국에 비해 장기이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40%), 상한액(100만원)이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소득대체율 및 지원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마. 시범사업 대상 확대(안 제144조의2)

현재 법 제114조에 따라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고용창출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등 실시를 통해 타당성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6. 21.
- 마감일자 : 2017. 7. 31.

○ 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 마련(안 제35조의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실업급여 지급기준 효율화(안 제45조)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보수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

다.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기금 계정 통합(안 제6조, 제82조)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기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55.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6. 22. • 마감일자 : 2017. 8. 2.

-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허기준과 보수교육 대상자 등을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지방 도선운영협회의 설치 단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 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7. 18.

-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

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22. • 마감일자 : 2017. 8. 7.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보호지역 관련 민원발생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72호, 2017. 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등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 1)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번호 및 도면의 명칭을 고시하도록 함.
 - 2) 다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 허용 범위를 마련(안 제9조제9항)
 - 1)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우마타 타기, 농장조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22. • 마감일자 : 2017. 8. 1.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절차 기간을 단축하여 소나무류 유통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신청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제2항)

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22. • 마감일자 : 2017. 8. 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658호, 2017.3.21.공포, 2017.9.22. 시행)되어 훈증처리 방제시 세부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22. • 마감일자 : 2017. 8.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4.18. 공포, 10.19.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자산 및 매출 확대를 감안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법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가. 1일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방법·절차 신설(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별표 1의5 신설)

1) 1일 평균매출액은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2)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최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불이행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2/1,000, 2/1,500, 2/2,0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나.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1)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 억원 이상으로,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2)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다.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안 제64조의7제1항제8호 개정)

라.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안 별표 1의2 개정)

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개정)

6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6. 22. • 마감일자 : 2017. 8. 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6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6. 23. • 마감일자 : 2017. 8. 2.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 권리·의무 승계 신고절차 명확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법률 제14614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6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6. 23. • 마감일자 : 2017. 8. 2.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기본계획 등 승인 및 보고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614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6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6. 23. • 마감일자 : 2017. 7. 4.
-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